

2020년도 제3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8.(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임형주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2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88건(안건번호 제2020-163131호~16355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63131호는 ●●●●● 답변 글에 게시된 동영상에 해외 음원이 삽입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될 경우 구매대행 프로세스 작성 글까지 함께 삭제될 수 있는 점, 안내가이드 동영상에서 음원부분만 시정권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3132호~163135호는 블로그에 영상 저작물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3136호, 163137호는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이 게시된 사안임. 우리말 자막파일은 영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게 되는 점, 링크 광고가 게재되어 있어 광고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3138호~16314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 만화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5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2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글 및 제목, 5쪽에 댓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식별 처리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글 및 제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8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313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에 “○○○○○○ ○○○○○○ ○○ ○○○○○”라는 질문하였고 중국구매대행업체 ‘★★★★★’이 답변을 등록하였음.

구매대행 절차와 설명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안내 동영상을 함께 올렸고 동영상을 재생하면 해외 음악이 함께 재생됨.

본 전문위원이 답변 작성한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고 이용허락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답변을 작성한 업체에서 게시글 내 동영상을 삭제하여 심의일 현재 해당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313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될 경우 구매대행 방법을 안내하는 글 전체가 삭제되는 점, 게시자가 저작권 문제를 인지하여 게시된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A 위원: 저작물의 게재 목적이 시정권고가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불법복제물의 확산과는 거리가 있는 점,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향후 재발이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시정권고 제도 취지는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인데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될 경우 안내가이드 동영상의 음원 부분만 시정권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D 위원, B 위원: 이견 없으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31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3132호~16313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블로그에 미국 성인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순번 2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 ■■■를 게시하였음.
(순번 3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 △△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4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 ▽▽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게시하였음.
(순번 5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전체 분량을 게시하였으며 영상 저작물에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3132호~16313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결 의견임.
- E 위원, A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3132호~1631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3136호, 16313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파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자막파일을 게시하면서 출처를 표시하고 있어 해당 블로거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자막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블로그 하단에는 링크 광고가 게재되어 있어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 법리 및 판례,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에 대한 정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3136호, 16313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막 파일을 게시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점, 자막 파일을 제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E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자막파일과 불법복제 영상물이 서로 결합하여 해당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3136호, 16313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3138호~16314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 만화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3138호~16314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복제하여 전송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B 위원, E 위원, D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3138호~1631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3141호~1635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게임,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 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게임 '옥토파스 트래블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 2019. 6. 8 출시한 게임을 340포인트에 판매 중임. 정품 가격은 59,800원임.

(방송 '수퍼내추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에서 수퍼내추럴 시즌15 20화를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수퍼내추럴 시즌15는 미국 CWTV에서 2019. 10. 10. ~ 2020. 11. 19. 20부작으로 방송되었음.

(방송 '홈랜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홈랜드 시즌3화 전편을 1,460포인트에 판매 중임. 홈랜드 시즌3는 미국 showtime에서 2013. 9. 29. ~ 2013. 12. 15. 12부작으로 방송되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63141호~1635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3141호~16355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6313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63132호~16355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5.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